

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11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욱 의원 등 8명(고명욱, 박정환, 남현주, 강한곤, 정순욱, 황국주, 도하석, 서보영)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3. 11.)

2. 개정이유

- 노인 인구 확대와 주거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1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지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
 - 「약사법」 제2조, 제24조
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2. 26. ~ 2025. 3. 9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(2017. 11. 28. 개정)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거체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5조 제2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기존 약국, 보건소에서 약국, 보건소, 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관,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6조 제3항에서 수거함 설치 기관의 관리자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였고, 제4항에서는 기존 운반·처리 규정을 수거·운반·처리로, 기존 “약국에서 수집”을 “수거장소에서 수집”으로, 제5항에서는 “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”을 “공공처리시설”로 각각 개정하여 확대 운영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및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수거장소를 대폭 확대하여 폐의약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위해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, 정책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